

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장(제4조부터 제17조까지)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 까지로 되어 있어, 이 법을 근거로 하여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법령 정비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7조 (안 제1조) → 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- 의회 사무직원의 정수 근거조례 정비
  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와 「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정원조례」 (안 제5조) →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조(교육위원회의 설치) 및 동법 제17조(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)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어, 이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 정수의 근거법령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교육위원 제도가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었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교육분야의 전문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유지하기로 하였음.
- 향후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감이 근무인력 구성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1부. 끝.